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건명: **늘파란 주식회사**
소유물건(2024타경55671)

의뢰인: **수원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강경래**

감정평가서번호: **22-240222-01**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이화감정평가법인 경기지사



(구분건물)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홍승정

홍 승 정



(주)이화감정평가법인 경기지사

(서명또는인)



| | | | | |
|----------------|--------------------------------|-------------|-------------------------|------------|
| 감정평가액 | 사십오억팔천일백만원정 (₩4,581,000,000.-) | | | |
| 의뢰인 | 수원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강경래 | 감정평가 목 적 | 법원경매 | |
| 제출처 | 수원지방법원 경매7계 | 기준가치 | 시장가치 | |
| 소유자 (대상업체명) | 늘파란 주식회사 (2024타경55671) | 감정평가 조 건 | - | |
| 목록표시 근 거 | 귀 제시목록 | 기준시점 | 조 사 기 간 | 작 성 일 |
| 기 타 참고사항 | - | 2024.02.28 | 2024.02.27 ~ 2024.02.28 | 2024.02.29 |

| 감 정 평 가 내 용 | 공부(公簿)(의뢰) | | 사 정 | | 감 정 평 가 액 | |
|----------------------------|------------|-------------|------|-------------|----------------|---------------|
| | 종 류 | 면적(㎡) 또는 수량 | 종 류 | 면적(㎡) 또는 수량 | 단 가 | 금 액 |
| | 구분건물 | 8개호 | 구분건물 | 8개호 | - | 4,581,000,000 |
| | 이 | 하 | 여 | 백 | | |
| 합 계 | | | | | ₩4,581,000,000 | |

심사확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사자 : 감정평가사
민태욱

민 태 욱

(인)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감정평가의 개요

1. 감정평가의 목적

본건은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소재 "영천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루체스타비즈 제 1층 제112호 외 7개호"로서, 수원지방법원의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임.

2. 감정평가기준 및 감정평가조건

가. 기준가치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시장가치란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을 말함.

나. 감정평가조건

별도의 감정평가조건은 없음.

3. 기준시점 및 실지조사기간

가.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본건 평가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 따라 가격조사완료일인 2024년 2월 28일임.

나.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그 내용

2024년 2월 27일 ~ 2024년 2월 28일에 귀 제시목록과 공부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을 실지조사 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4. 대상 물건의 개요

가. 대상물건 소재지 집합건축물 전체 관련

| | | | |
|------------|------------------------------------|---------|-------------|
|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836-2 | | |
|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 | |
| 집합건물 주구조 등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 | |
| 집합건물 주용도 | 공장(지식산업센터), 제1,2종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사무소) | 사용승인일 | 2018.12.28. |
| 집합건물 명칭 | 루체스타비즈 | 호수 | 235호 |
| 연면적(㎡) | 31,109.07 | 대지면적(㎡) | 5,091.2 |

나. 대상물건 관련

| 기호 | 명칭 층·호수 | 공부상 용도 | 전유면적 (㎡) | 공용면적 (주)(㎡) | 대지권 비율 |
|----|---------------------|----------------------|-------------|----------------|-----------|
| 가 | 루체스타비즈 제1층 제112호 |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 44.15 | 44.11 | 미등기 |
| 나 | 루체스타비즈 제1층 제118호 |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 47.74 | 47.71 | 미등기 |
| 다 | 루체스타비즈 제1층 제119호 |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 52.7 | 52.67 | 미등기 |
| 라 | 루체스타비즈 제2층 제212호 | 업무시설 (사무소) | 88.6 | 88.54 | 미등기 |
| 마 | 루체스타비즈 제8층 제811호 | 공장 (지식산업센터) | 46.17 | 46.13 | 미등기 |
| 바 | 루체스타비즈 제8층 제812호 | 공장 (지식산업센터) | 46.17 | 46.13 | 미등기 |
| 사 | 루체스타비즈 제8층 제818호 | 공장 (지식산업센터) | 34.15 | 34.13 | 미등기 |
| 아 | 루체스타비즈 제9층 제914호 | 공장 (지식산업센터) | 44.95 | 44.92 | 미등기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5. 그 밖의 사항

- 가. 본건의 소재지, 위치, 구조, 면적 및 이용상황 등은 귀 제시목록 및 공부 등에 의거 하였음.
- 나. 본 평가는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로서, 담보 등 기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다른 목적으로 감정평가 시 감정평가액 등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다. 본건은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내부구조 및 이용상황 등은 집합건축물대장 현황 도면, 전례 및 공부상용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는 바 경매진행 및 입찰참여시 정확한 내부 구조 및 이용상황 등은 재확인 후 입찰바람.
- 라. 구분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따라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분양 및 거래가 이루어지는바 토지·건물의 구분평가는 원칙적으로 곤란하나, 귀 요청에 의거 대상부동산의 평가가격을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배분하여 "구분건물감정평가명세표상"에 기재하였으니 참고바람.
- 마. 본건 기호 (나), (다)는 호별벽체 및 복도 경계벽 등이 없이 일체의 근린생활시설로 이용 중인 일명 "튼 상가" 상태로서 집합건축물대장현황 도면(1층 평면도)에 의거하여 개별호수의 위치를 확인하여 평가하였는바 경매진행 및 입찰참여시 참고바람.
- 바. 본건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 및 대지권이 미이전 및 미등기된 상태이나 구분소유 건물은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에 따라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거래 및 분양이 이루어지는바 추후 본건 건물에 적정 대지권이 조건없이 이전될 것을 전제로 대지권을 포함하여 토지와 건물을 일괄 평가하고 관련 배분비율에 의거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배분하였으니 경매진행 및 입찰참여시 참고바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감정평가 방법 및 감정평가 절차

1. 감정평가의 근거 법령 및 감정평가 방법

가. 감정평가의 근거 법령 등

본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감정평가관계법규 및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평가원칙에 의거하여 평가하였음.

나. 감정평가 관련 규정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 (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

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 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시장가치기준 원칙)

- ①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1. “시장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이하 “대상물건”이라 한다)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價額)을 말한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 (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감정평가법인등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등 제7조제2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 ①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 ②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 ③ 제2항 본문의 분리처분금지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

다. 본건에 적용한 감정평가방법

본건과 같이 구분건물은 임료의 지행성에 따른 적정임료 포착이 어려워 수익환원법의 적용이 곤란하고, 최초 신축시 토지매입비용, 건축비용 등 비용자료 확보가 어려워 원가법의 적용이 곤란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토지·건물 일체로 거래되는 시장관행을 반영하여 일반적인 거래사례와 위치, 입지조건, 부근상황 및 건물의 구조, 용재, 시공상태, 설비상태, 층별·향별·위치별 효용성 등 제반 가격 형성요인을 비교·검토하여 대지권인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평가하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 감정평가 절차

본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를 근거로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작성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I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비준가액

1.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거래사례 단가 × 사정보정 × 시점수정 × 가치형성요인 =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적용단가

2. 인근·유사지역 내 거래사례

【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KAIS(한국부동산원)】

| 사례 | 소재지 | 명칭 층·호수 | 공부상 용도 | 전유 면적 (㎡) | 총액(원) (전유면적당단가) | 거래시점 (사용승인일) |
|----|--------------|------------------|-----------|-----------------|-------------------------------|----------------------------|
| A | 영천동 836-2 | 루체스타비즈 000호 | 2중 근생 | 50.22 | 1,100,000,000 (21,903,624) | 2023.08.01 (2018.12.28) |
| B | 영천동 836-2 | 루체스타비즈 000호 | 2중 근생 | 40.02 | 890,000,000 (22,238,881) | 2023.04.03 (2018.12.28) |
| C | 영천동 835-1 | 더퍼스트타워투 000호 | 사무소 | 45.6 | 330,126,720 (7,239,621) | 2023.12.10 (2019.12.03) |
| D | 영천동 835-1 | 더퍼스타타워투 000호 | 업무 시설 | 45.6 | 330,126,720 (7,239,621) | 2023.11.08 (2019.12.03) |
| E | 영천동 836-2 | 루체스타비즈 000호 | 기타 공장 | 46.17 | 170,000,000 (3,682,045) | 2023.02.18 (2018.12.28) |
| F | 영천동 836-1 | 더퍼스트타워쓰리 000호 | 기타 공장 | 82.72 | 323,000,000 (3,904,739) | 2023.10.31 (2019.05.07)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3. 거래사례의 선정

상기 거래사례 중 인근지역에 소재하며, 대상물건과 유형·구조·규모·동·층·향·호별·위치, 대지권 규모, 기타 제반 가치형성요인 등이 동일 및 유사하여 비교 가능성이 높으며, 거래가 완료된 사례 중에서 거래시점의 시장상황 및 가격수준을 다른 거래사례보다 더 잘 반영하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거래완료 확인이 가능한 아래의 거래사례를 각각 비교사례로 선정함.

| 본건 | 비교사례 |
|------------|------|
| 가, 나, 다 | A |
| 라 | C |
| 마, 바, 사, 아 | E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4. 사정보정

사정보정이란 가격의 산정에 있어서 수집된 거래사례에 거래관계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개입되어 있거나 거래당사자가 시장사정에 정통하지 못하여 적정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된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가격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의미하는 바, 상기 선정된 사례는 현장조사 시 조사된 인근지역의 시세수준과 부합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정보정은 필요하지 아니함.

| | |
|-------|------|
| 사정보정치 | 1.00 |
|-------|------|

5. 시점수정

가. 적용 지수

시점수정이란 비교사례의 거래시점과 본 감정평가의 기준시점 간의 시간적인 괴리로 인한 가격수준의 변동이 있을 경우 비교사례를 기준시점 현재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 중 거래사례가 소재한 지역인 “경기도 동탄2신도시 집합상가 자본수익률”을 활용함.

나. 결정

| 기호 | 지역 | 구분 | 가격지수 | 비고 |
|----|------------|------------|---------|---|
| A | 경기도 동탄2신도시 | 2023.08.01 | 0.44 | 거래시점(적용: 2023년 03분기) |
| | | 2024.02.28 | 0.79 | 기준시점(적용: 2023년 04분기) |
| | | 시점수정치 | 1.01596 | $(1+0.0044*61/92)*(1+0.0079)*(1+0.0079*59/92) \approx 1.01596$ |
| C | 경기도 동탄2신도시 | 2023.12.10 | 0.79 | 거래시점(적용: 2023년 04분기) |
| | | 2024.02.28 | 0.79 | 기준시점(적용: 2023년 04분기) |
| | | 시점수정치 | 1.00697 | $(1+0.0079*22/92)*(1+0.0079*59/92) \approx 1.00697$ |
| E | 경기도 동탄2신도시 | 2023.02.18 | 0.58 | 거래시점(적용: 2023년 01분기) |
| | | 2024.02.28 | 0.79 | 기준시점(적용: 2023년 04분기) |
| | | 시점수정치 | 1.02930 | $(1+0.0058*42/90)*(1+0.0089)*(1+0.0044)*(1+0.0079)*(1+0.0079*59/92) \approx 1.0293$ |

※ 2024년 1분기 이후의 자본수익률 미공시로 2023년 4분기 지가변동률을 연장적용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6. 가치형성요인 비교

가. 가치형성요인의 개념 등

가치형성요인이란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항목은 아래와 같음.

| 상업용 집합건물 가치형성요인 | |
|-----------------|--|
| 조건 | 세부항목 |
| 외부 요인 | 고객 유동성과의 적합성, 도심지 및 상업,업무시설과의 접근성 대중교통의 편의성(지하철, 버스정류장), 배후지의 크기, 상가의 성숙도 차량이용의 편의성(가로폭, 구조 등) |
| 내부 요인 | 단지내 주차의 편리성, 건물 전체의 공실률 건물 관리상태 및 각종 설비의 유무, 건물 전체의 임대료 수준 및 임대비율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건물의 규모 및 최고층수, 경과년수에 따른 노후도 |
| 호별 요인 | 층별 효용,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향별 효용,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권의 크기 내부 평면방식, 주출입구와의 거리 |
| 기타 요인 | 기타가치에 미치는 요인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나. 가치형성요인의 비교

| 본건 | 사례 | 조건 | | | | 개별요인 비교치 |
|----|-------------------------------|------|------|------|------|-------------|
| | | 외부요인 | 내부요인 | 호별요인 | 기타요인 | |
| 가 | A | 1.00 | 1.00 | 1.00 | 1.00 | 1.000 |
| 비고 | 대체로 대등함. | | | | | |
| 나 | A | 1.00 | 1.00 | 1.00 | 1.00 | 1.000 |
| 비고 | 대체로 대등함. | | | | | |
| 다 | A | 1.00 | 1.00 | 1.07 | 1.00 | 1.070 |
| 비고 | 본건이 호별요인(위치별 효용 등) 등에서 우세함. | | | | | |
| 라 | C | 1.00 | 1.00 | 0.98 | 1.00 | 0.980 |
| 비고 | 본건이 호별요인(전유면적의 크기 등) 등에서 열세함. | | | | | |
| 마 | E | 1.00 | 1.00 | 1.00 | 1.00 | 1.000 |
| 비고 | 대체로 대등함. | | | | | |
| 바 | E | 1.00 | 1.00 | 1.00 | 1.00 | 1.000 |
| 비고 | 대체로 대등함. | | | | | |
| 사 | E | 1.00 | 1.00 | 1.00 | 1.00 | 1.000 |
| 비고 | 대체로 대등함. | | | | | |
| 아 | E | 1.00 | 1.00 | 1.00 | 1.00 | 1.000 |
| 비고 | 대체로 대등함. | | | |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7.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 본건 기호 | 사례 기호 | 사례단가 (원/㎡) | 사정 보정 | 시점 수정 | 가치형성 요인비교 | 산출단가 (원/㎡) | 적용단가 (원/㎡) |
|----------|----------|---------------|----------|----------|--------------|---------------|---------------|
| 가 | A | 21,903,624 | 1.00 | 1.01596 | 1.000 | 22,253,206 | 22,250,000 |
| 나 | A | 21,903,624 | 1.00 | 1.01596 | 1.000 | 22,253,206 | 22,250,000 |
| 다 | A | 21,903,624 | 1.00 | 1.01596 | 1.070 | 23,810,930 | 23,810,000 |
| 라 | C | 7,239,621 | 1.00 | 1.00697 | 0.980 | 7,144,280 | 7,140,000 |
| 마 | E | 3,682,045 | 1.00 | 1.02930 | 1.000 | 3,789,929 | 3,790,000 |
| 바 | E | 3,682,045 | 1.00 | 1.02930 | 1.000 | 3,789,929 | 3,790,000 |
| 사 | E | 3,682,045 | 1.00 | 1.02930 | 1.000 | 3,789,929 | 3,790,000 |
| 아 | E | 3,682,045 | 1.00 | 1.02930 | 1.000 | 3,789,929 | 3,790,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V 감정평가액의 결정 및 결정의견

1. 참고가격자료

가. 인근지역 탐문조사내용

| 기호 | 전용면적당 단가수준(원/㎡) | 출처 |
|------------|-------------------------|----------------------------|
| 가, 나, 다 | 22,000,000 ~ 24,000,000 |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및 부동산 거래사이트 |
| 라 | 6,500,000 ~ 7,500,000 | |
| 마, 바, 사, 아 | 3,000,000 ~ 4,000,000 | |

나. 근린 경매 낙찰가율 통계

【출처 : 부동산태인】

| 지역 | 기간 | 낙찰가 | | | 낙찰건 | | | 비고 |
|------------|----------------------------|----------------|----------------|-------|-----|------|-------|------|
| | | 총감정가(원) | 총낙찰가(원) | 율(%) | 총건수 | 낙찰건수 | 율(%) | |
| 경기도 화성시 | 2023.03.01 ~ 2024.02.28 | 79,932,535,340 | 49,642,815,448 | 62.76 | 445 | 83 | 18.65 | 근린 |
| | | 6,617,456,000 | 4,341,936,942 | 65.61 | 175 | 47 | 26.86 | 업무시설 |

다. 인근·유사지역 내의 평가사례

【출처 : KAPA-HUB(한국감정평가사협회)】

| 기호 | 소재지 | 명칭 층·호수 | 공부상 용도 | 전유 면적 (㎡) | 총액(원) (전유면적당, 원/㎡) | 기준시점 (사용승인일) | 평가 목적 | 비고 |
|----|--------------|-----------------|-----------|-----------------|-----------------------------|----------------------------|----------|----|
| a | 영천동 836-2 | 루체스타비즈 제110호 | 근린생활시설 | 44.15 | 931,000,000 (21,087,203) | 2024.02.02 (2018.12.28) | 경매 | - |
| | | | | | 603,000,000 (7,023,061) | 2023.12.12 (2018.12.28) | | |
| b | 영천동 836-2 | 루체스타비즈 제210호 | 업무시설 | 85.86 | 126,000,000 (3,689,605) | 2023.04.21 (2018.12.28) | 경매 | - |
| | | | | | 603,000,000 (7,023,061) | 2023.12.12 (2018.12.28) | | |
| c | 영천동 836-2 | 루체스타비즈 제603호 | 근린생활시설 | 34.15 | 931,000,000 (21,087,203) | 2024.02.02 (2018.12.28) | 경매 | - |
| | | | | | 603,000,000 (7,023,061) | 2023.12.12 (2018.12.28) |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 감정평가액의 결정 등

가. 감정평가액의 결정

| 본건 기호 | 전유면적당 단가(원/㎡) | 전유 면적(㎡) | 공용면적 (주)(㎡) | 산출가액 (원) | 감정평가액 (원) | 비고 |
|----------|------------------|-------------|----------------|---------------|---------------|----|
| 가 | 22,250,000 | 44.15 | 44.11 | 982,337,500 | 982,000,000 | - |
| 나 | 22,250,000 | 47.74 | 47.71 | 1,062,215,000 | 1,062,000,000 | - |
| 다 | 23,810,000 | 52.7 | 52.67 | 1,254,787,000 | 1,255,000,000 | - |
| 라 | 7,140,000 | 88.6 | 88.54 | 632,604,000 | 633,000,000 | - |
| 마 | 3,790,000 | 46.17 | 46.13 | 174,984,300 | 175,000,000 | - |
| 바 | 3,790,000 | 46.17 | 46.13 | 174,984,300 | 175,000,000 | - |
| 사 | 3,790,000 | 34.15 | 34.13 | 129,428,500 | 129,000,000 | - |
| 아 | 3,790,000 | 44.95 | 44.92 | 170,360,500 | 170,000,000 | - |
| 합계 | | | | | 4,581,000,000 | |

※ 감정평가액 결정에 있어서 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였음.

나. 결정에 대한 의견

상기 참고가격 자료(인근지역 탐문조사에 의한 가격수준, 경매낙찰가율, 거래사례, 평가 사례 등)에 의해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비준가액을 기준으로 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함.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서

|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 번 | 지 목 및 용 도 | 용도지역 및 구 조 | 면 적 (㎡) | | 감정평가액 | 비 고 | | | |
|---|--|---------------------|--|---------------------------------------|----------|-------|-------------------------|---|---------------------------------|--|--|
| | | | | | 공 부 | 사 정 | | | | | |
| 1 가 나 |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594-7 | 836-2 루체스타 비즈 | 공장 (지식산업 센터), 제1.2층 근린생활 시설, 업무시설 (사무소) | 철근콘크리트 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14층 | | | | | | | |
| | | | | 지2층 | 4,049.09 | | | | | | |
| | | | | 지1층 | 4,226.03 | | | | | | |
| | | | | 1층 | 2,676.2 | | | | | | |
| | | | | 2층 | 2,603.81 | | | | | | |
| | | | | 3층 - 4층 각 | 2,613.53 | | | | | | |
| | | | | 5층 | 1,563.89 | | | | | | |
| | | | | 6층 - 8층 각 | 1,226.12 | | | | | | |
| | | | | 9층 | 1,216.8 | | | | | | |
| | | | | 10층 - 11층 각 | 1,226.12 | | | | | | |
| | | | | 12층 | 1,222.42 | | | | | | |
| | | | | 13층 | 1,226.12 | | | | | | |
| | | | | 14층 | 967.05 | | | | | | |
| | | | | 옥탑1층 (연면적제외) | 276.06 | | | | | | |
| | | | | 836-2 | 공장용지 | 준주거지역 | 5,091.2 | | | | |
| | | | | (내) 철근콘크리트 구조 제1층 제112호 | 44.15 | 44.15 | 토지·건물 토 지 : 건 물 : | 982,000,000 배분내역 294,600,000 687,400,000 | 비준가액 (공용면적 및 적정대지권 포함) | | |
| | | | | (내) 철근콘크리트 구조 제1층 제118호 | 47.74 | 47.74 | 토지·건물 토 지 : 건 물 : | 1,062,000,000 배분내역 318,600,000 743,400,000 | 비준가액 (공용면적 및 적정대지권 포함) | | |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 번 | 지 목 및 용 도 | 용도지역 및 구 조 | 면 적 (㎡) | | 감정평가액 | 비 고 |
|----------|-----|-----|-----------------|----------------------------------|---------|----------------------------------|---|---------------------------------|
| | | | | | 공 부 | 사 정 | | |
| 다 | | | | (내) 철근콘크리트 구조 제1층 제119호 | 52.7 | 52.7 토지·건물 토 지 : 건 물 : | 1,255,000,000 배분내역 376,500,000 878,500,000 | 비준가액 (공용면적 및 적정대지권 포함) |
| 라 | | | | (내) 철근콘크리트 구조 제2층 제212호 | 88.6 | 88.6 토지·건물 토 지 : 건 물 : | 633,000,000 배분내역 189,900,000 443,100,000 | 비준가액 (공용면적 및 적정대지권 포함) |
| 마 | | | | (내) 철근콘크리트 구조 제8층 제811호 | 46.17 | 46.17 토지·건물 토 지 : 건 물 : | 175,000,000 배분내역 70,000,000 105,000,000 | 비준가액 (공용면적 및 적정대지권 포함) |
| 바 | | | | (내) 철근콘크리트 구조 제8층 제812호 | 46.17 | 46.17 토지·건물 토 지 : 건 물 : | 175,000,000 배분내역 70,000,000 105,000,000 | 비준가액 (공용면적 및 적정대지권 포함) |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 번 | 지 목 및 용 도 | 용도지역 및 구 조 | 면 적 (㎡) | | 감정평가액 | 비 고 |
|------------|-----|-----|-----------------|----------------------------------|---------|----------------------------------|--|---------------------------------|
| | | | | | 공 부 | 사 정 | | |
| 사 | | | | (내) 철근콘크리트 구조 제8층 제818호 | 34.15 | 34.15 토지·건물 토 지 : 건 물 : | 129,000,000 배분내역 51,600,000 77,400,000 | 비준가액 (공용면적 및 적정대지권 포함) |
| 아 | | | | (내) 철근콘크리트 구조 제9층 제914호 | 44.95 | 44.95 토지·건물 토 지 : 건 물 : | 170,000,000 배분내역 68,000,000 102,000,000 | 비준가액 (공용면적 및 적정대지권 포함) |
| 합 계 | | | | 이 하 | 여 | 백 | ₩4,581,000,000.- | |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건물의 구조 | (4) 이용상태 |
| (5) 설비내역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7) 인접 도로상태 등 | |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소재 "영천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등이 소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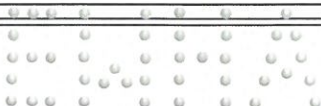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4층 건물 내 제1층 112호 외 7개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8.12.28.)
외 벽 : 돌 붙임 마감 등,
창 호 : 샷시 창호 등임.

(4) 이용상태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 구비되어 있음.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건물의 구조 | (4) 이용상태 |
| (5) 설비내역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7) 인접 도로상태 등 | |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사다리형 평지로서, 공장(지식산업센터), 제1.2종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사무소) 부지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서측으로 광대로와, 동측으로 소로와, 남측으로 세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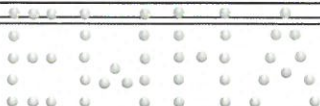
준주거지역(동탄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화성동탄(2)), 대로3류(폭 25m~30m)(일반도로, 동탄2지구)(접합), 중로3류(폭 12m~15m)(중(집)3-126)(접합), 중로3류(폭 12m~15m)(중(집) 3-132)(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도로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임.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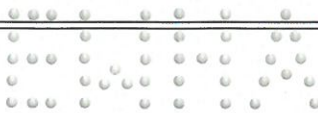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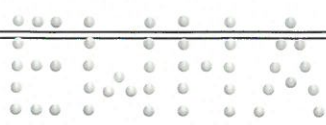
광역위치도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836-2 루체스타비즈 1층 11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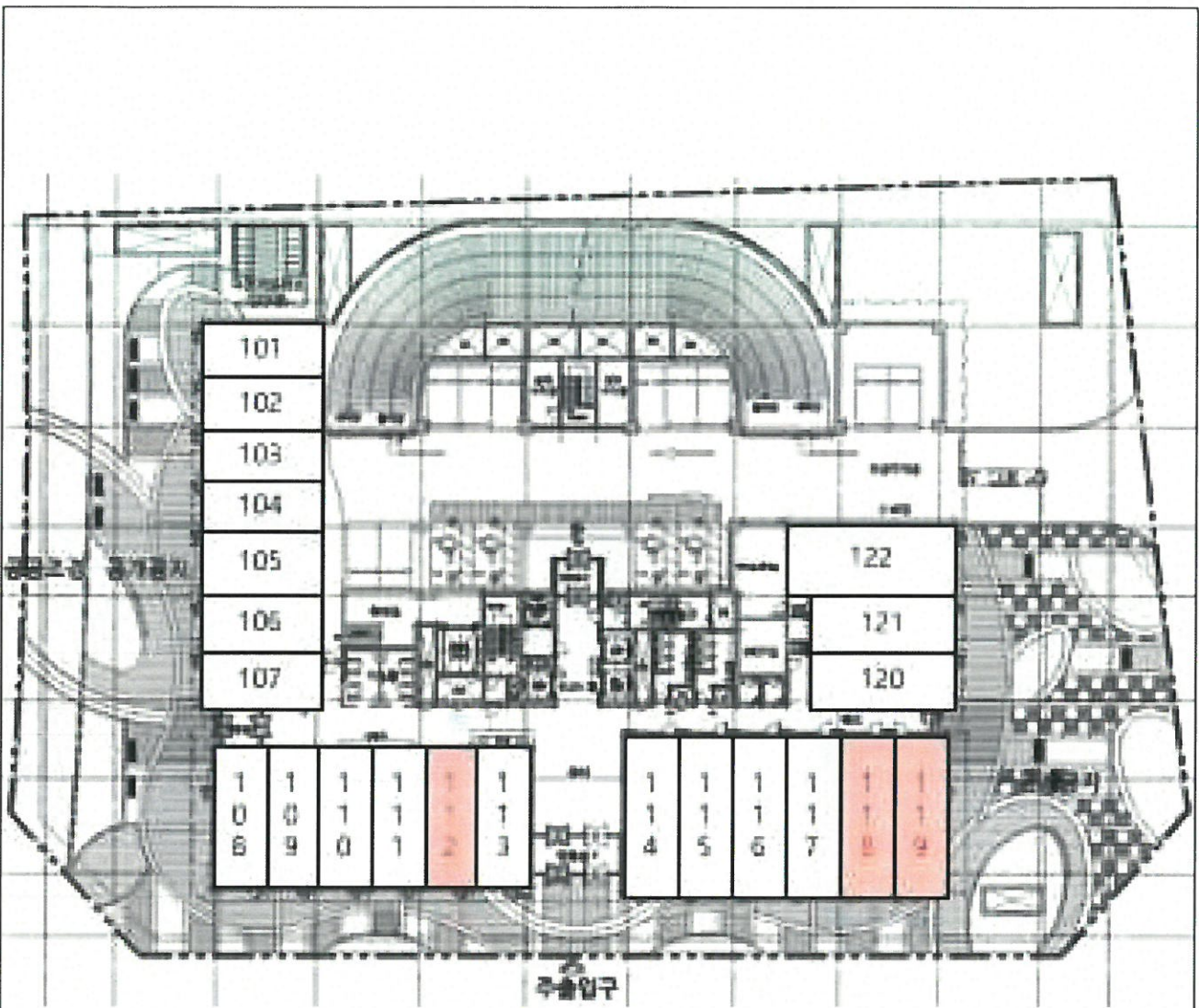
위 치 도



내부 구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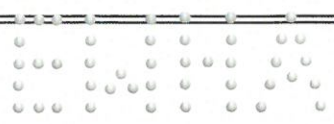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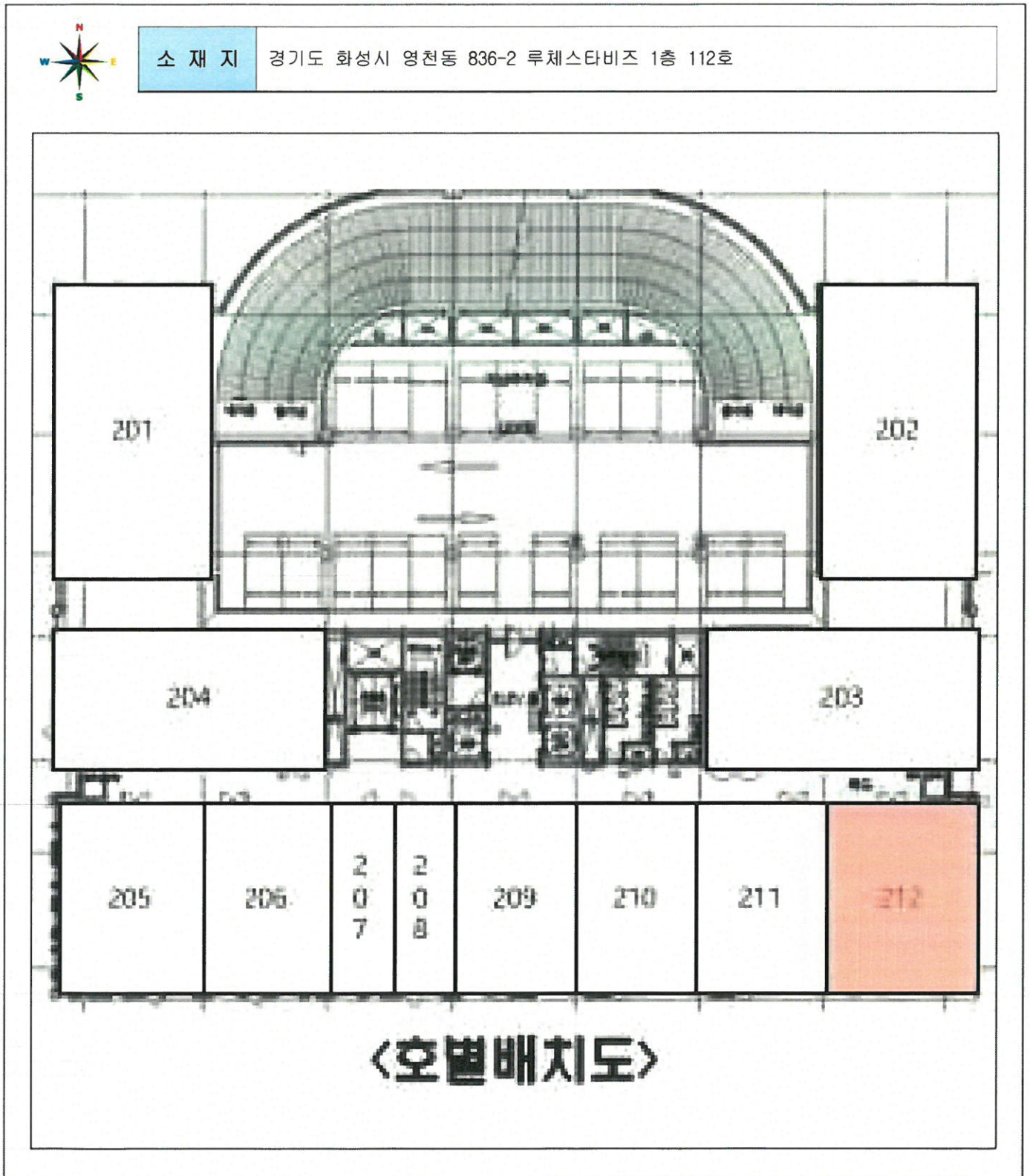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836-2 루체스타비즈 1층 112호



<호별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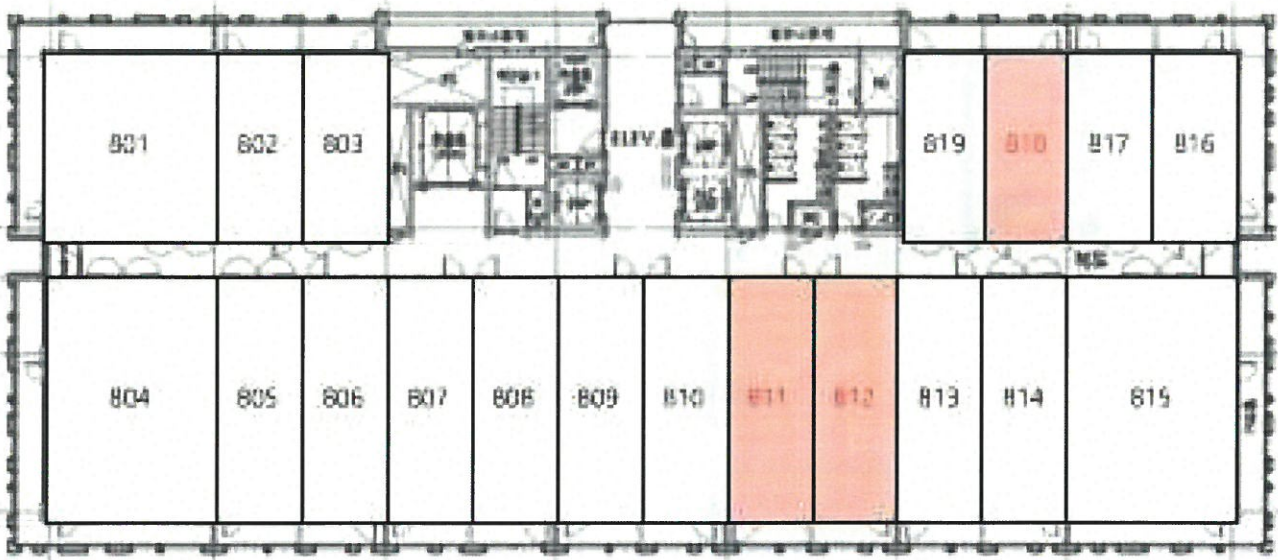
내부구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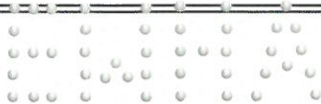
내부구조도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836-2 루체스타비즈 1층 112호



〈호별배치도〉



내부구조도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836-2 루체스타비즈 1층 112호



〈호별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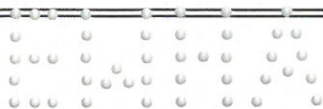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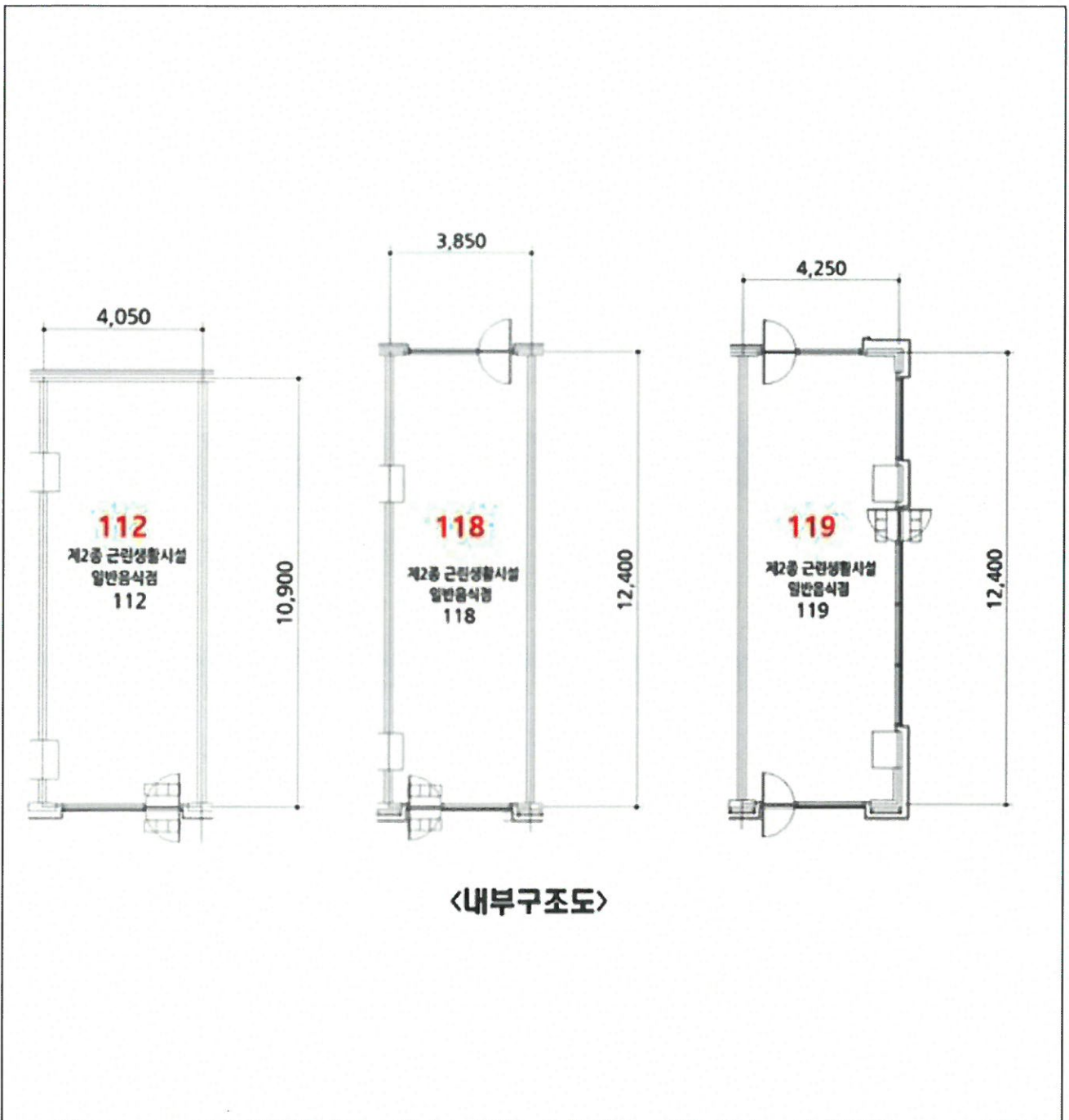


내부구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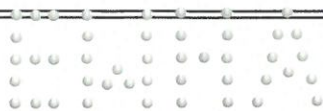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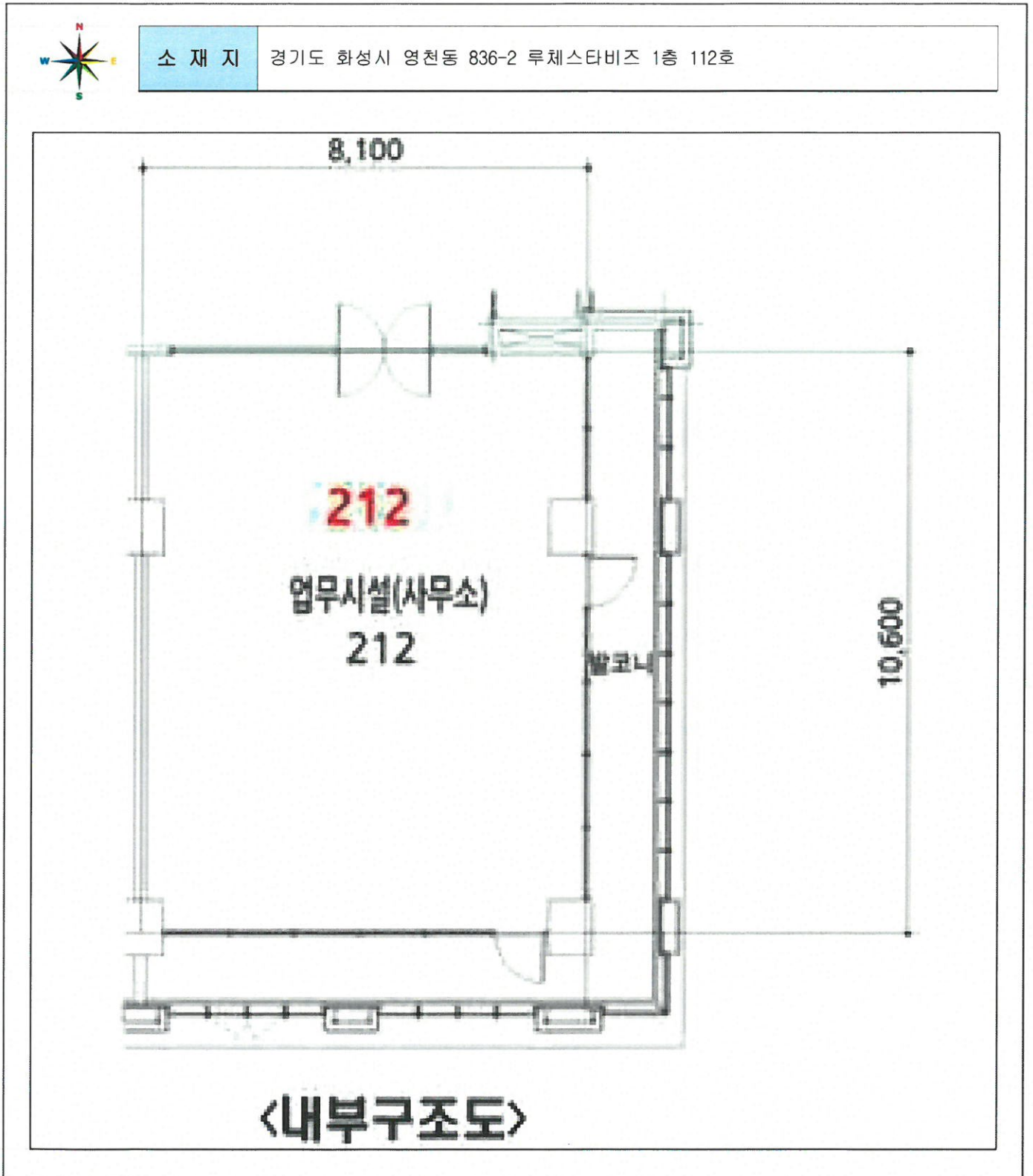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836-2 루체스타비즈 1층 112호



내부구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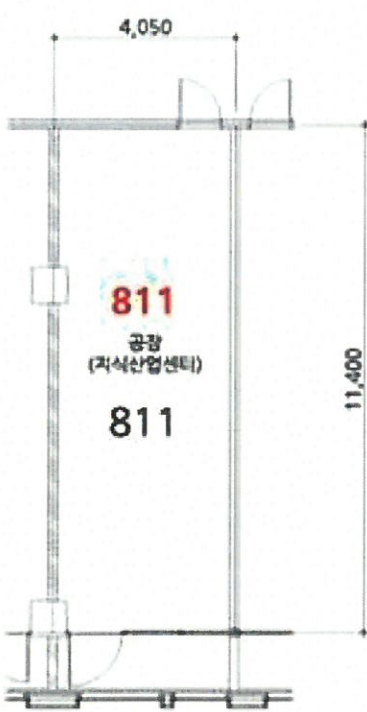


내부구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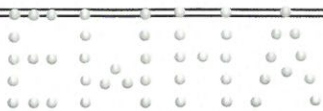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836-2 루체스타비즈 1층 112호



<내부구조도>



내부구조도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836-2 루체스타비즈 1층 112호



사 진 용 지



본건 건물 전경



본건 주출입구 전경



본건 기호 (가) 전경



본건 기호 (나), 다 전경



사진용지



본건 기호 (라) 호 전경



본건 기호 (마), (바) 호 전경



본건 기호 (사) 호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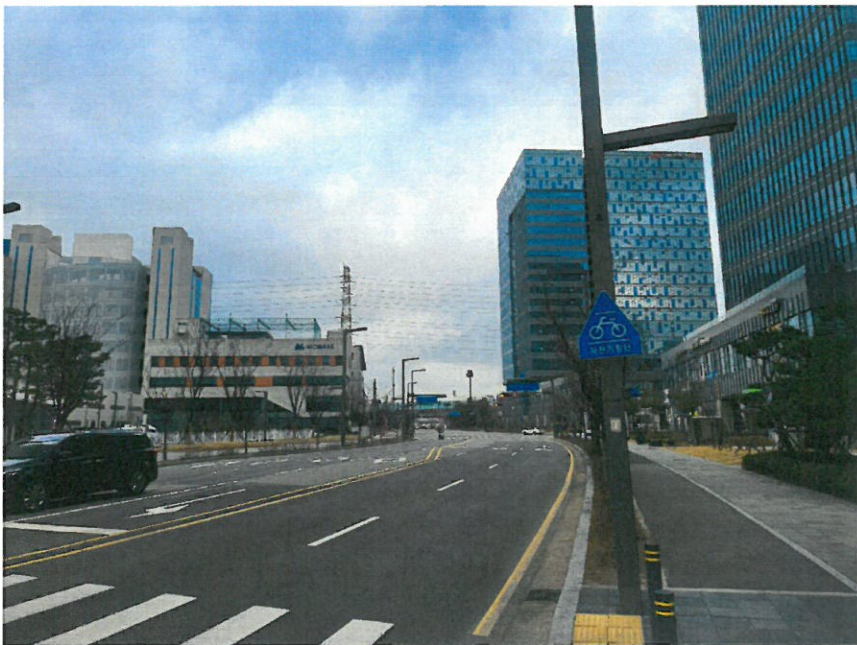
본건 기호 (아) 호 전경



사 진 용 지



주위환경 (1)



주위환경 (2)

